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예고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0. 13.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담양군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 관리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3. ~ 10. 18.(5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 및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양군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건전한 물순환”이란 개발 등으로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게 되기 이전과 비슷하게, 빗물이 잘 스며들고 흐르는 상태를 말한다.
3. “불투수면”이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인공적인 재료나 구조물로 덮여 빗물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4.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에 따른 자연적 물순환 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빗물의 침투, 증발산, 체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개발 전의 물순환 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회복시키는 토지이용 및 개발기법을 말한다.
5. “빗물관리시설”이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거나 모아 두었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농업용수의 순환이용”이란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계획적으로 나누

어 쓰고 다시 활용함으로써 가뭄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물순환의 구축과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민 및 사업자는 일상생활 및 개발행위 등에서 빗물의 침투와 이용을 촉진하는 등 건전한 물순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담양군이 추진하는 물순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건전한 물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담양군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3.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포장면적 현황, 불투수면 비율, 빗물관리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① 군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물 설치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주차장 등 빗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포장면적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책) ① 군수는 영산강 시원지 등 물을 머금고 저장하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 보호·육성 시책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뭄에 대비하고 물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저수지, 하천수 등 농업용수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의 물순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